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案)	비고
제4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stock.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 회사 도메인 변경에 따른 수정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생략)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 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 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u>상환주식</u>, 전환주 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2항: 상법 제344조에 의거하여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 추가
제8조 (우선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 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삼천만주로 한다. ② <u>우선주식에</u>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 12%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을	제8조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u>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 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 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 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u> ② <u>이익배당우선주식에</u>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u>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u>	□ 제목을 수정하고 (용어 이하 동일), 상법 제344조의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 - 제1항: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를 신설하고, 이익배당우선주식의 종류를 열거

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2항: 우선배당률 결정과 우선배당방법에 대한 수정

- 제3항: 제1항의 참가적 이익배당주식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되어 삭제함

- 제4항: 제1항의 누적적 이익배당주식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되어 삭제함

- 제5항: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식 뿐만 아니라 종류주식으로도 신주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限)

- 제6항: 이익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과 기간의 연장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인용 조문 변경 및 이익배당에 관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

<신 설>

제8조의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삼천만주로 한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제8조의2 (의결권배제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

□ 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배제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문 신설

-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제1항을 반영하여, 발행한도를 규정
- 제2항: 의결권배제주식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환주식 관련 내용 구체화

- 제1항: 전환주식 발행 한도 수정

- 제2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는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문구수정
- 제3항: 전환주식의 종류 구체적으로 기재

③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u>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u>	<u>할 수 있다.</u> ④ <u>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u>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⑤ <u>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u> ⑥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u> ⑦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⑧ <u>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⑨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 제4항: 상법 제346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게 전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함 - 제5항: 상법 제34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있는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함 - 제6항: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재 - 제7항: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 - 제8항: 전환주식 전환 및 전환청구가능 기간 수정 - 제9항: 인용 조문 변경 및 전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변경
--	--	---

<신 설>

제8조의4 (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제1항: 상환주식 발행 한도

- 제2항: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라 상환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함

- 제3항: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결정방법을 정함

- 제4항: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라 상환방법에 대하여 기재함

- 제5항: 상법 제345조 제2항 반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 (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제6항: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라 주주가 상환청구 가능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기재 - 제7항: 전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함 - 제8항: 상법 제345조 제4항 반영 - 제9항: 상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 자본시장법 반영하여 수정 -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을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각 그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를 포함)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반영하여 신주발행방식을 규정함 -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에 의거, 불특정다수에게 청약시의 신주배정방법을 규정
--	---	--

③ <u>제2항에</u>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u>제2항</u>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u>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u>	<u>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u>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③ <u>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u>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u>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u> ④ <u>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u>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u> ⑥ <u>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u>	- 제3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의거, 신주배정시 2주전 통지의 예외사항 규정 - 제4항: 인용 조문 변경 - 제5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의 처리방식 규정 - 제6항: 단주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으로
--	--	---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⑦ (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략)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u>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u>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u>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u>제1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u>한</u>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② <u>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u>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u>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규정 - 제7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반영 □ 제8항: 인용 조문 변경 □ 제2항: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함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5조의6 제1항, 제4항 및 상장회사
--	---	--

<u>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3.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u> <u>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u> <u>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u>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u>	표준정관 반영 -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에 의거, 전환사채의 발행방식 규정 -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에 의거,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배정방법 규정
--	--	---

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u>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u> ④ 전환을 <u>청구하는</u> 기간은 당해 사채의 <u>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u>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u>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u>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u>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u>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u>청구할 수 있는</u> 기간은 당해 사채의 <u>발행일로부터</u>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u>사채 발행 시</u>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제10조의4 <u>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u>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u>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1. <u>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u>	- 제4항: 전환으로 인한 발행주식을 보통주식 뿐 아니라 정관상의 종류주식으로 확대 - 제5항: 전환청구기간 결정시 이사회 결의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6항: 이익배당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기산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함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5조의6 제1항, 제4항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반영 -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에 의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방식 규정
---	---	--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에 의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배정시 사채배정방법 규정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u>보통주식</u>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u>규정을 준용한다.</u> 제31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u>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u>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u> ② <u>사외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u>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사채 발행 시</u>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u>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고,</u> 그 발행가액은 <u>주식의</u>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u>발행일로부터</u>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u>사채 발행 시</u>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u>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제31조 (사외이사 등 후보의 추천) ① <u>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u>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u> ② <u>제1항의</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임원후보추천위원회</u>에서 정한다.	- 제3항: 신주인수청구 가능금액 결정시기를 명시함 - 제4항: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확대함 - 제5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발행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함 - 제6항: 이익배당 및 이차지급에 관한 기산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함 □ 문구 수정 - 지배구조법 제17조에 의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명시
--	--	---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신 설>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u>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u>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u>전략기획,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연임할 수 있다.</u>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u>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u>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u> <u>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u> <u>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u> <u>8.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u>	□ 제2항: 지배구조법 제8조 의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도 신설 및 임기 관련 규정 마련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수정 - 제1항: 지배구조법 제15조 의거,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명시
--	--	--

②~③ (생략) ④ <u>이사회</u>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에 <u>각 이사에</u>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③ (생략) 제40조 (위원회) ① (생략) 1. <u>경영위원회</u> 2.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3. <u>감사위원회</u> 4. <u>리스크관리위원회</u> 5.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일 3일전에 <u>각 이사에게 소집통지 하고 회의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u>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와 <u>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u>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u>임원후보추천위원회</u> 2. <u>감사위원회</u> 3. <u>위험관리위원회</u> 4. <u>보수위원회</u> 5. (현행과 같음)	-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자료 제공기간 명시 □ 제1항: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제28조 의거, 이사회 2/3이상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 제1항: 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의거, 법상 규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변경하여 명시 (위원회 명칭 및 순서 변경)
--	---	--

②~④ (생략)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u> ② <u>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2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 이상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④ (현행과 같음)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u>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u> ② <u>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u> ③ <u>감사위원 후보는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u>	□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 - 제1항: 현행 제2항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일부 반영 - 제2항: 감사위원 1명 이상의 자격요건 규정하는 법률 변경 (자본시장법 → 지배구조법) - 제3항: 지배구조법 제19조 제4항 의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및 결의요건 명시
---	---	---

④ <u>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u> <u>위원의</u> <u>주주총회</u> <u>선임</u> <u>시에는</u> <u>의결권</u> <u>있는</u> <u>발행주식총수의</u> <u>100분의</u> <u>3을</u> <u>초과하는</u> <u>수</u> <u>의</u> <u>주식</u> <u>을</u> <u>가진</u> <u>주주</u> <u>는</u> <u>그</u> <u>초과하는</u> <u>주식</u> <u>에</u> <u>대하여</u> <u>의결</u> <u>권</u> <u>을</u> <u>행사</u> <u>하지</u> <u>못</u> <u>한</u> <u>다</u>. ⑤ <u>사외이사가</u> <u>아닌</u> <u>감사위원회</u> <u>위원</u> <u>을</u> <u>선임</u> <u>하거나</u> <u>해임</u> <u>할</u> <u>때에는</u> <u>의결권</u> <u>을</u> <u>행사</u> <u>할</u> <u>최대주주</u> <u>와</u> <u>그</u> <u>특수관계인</u>, <u>최대주주</u> <u>또는</u> <u>그</u> <u>특수관계인</u> <u>의</u> <u>계산</u> <u>으로</u> <u>주식</u> <u>을</u> <u>보유</u> <u>하</u> <u>는</u> <u>자</u>, <u>최대주주</u> <u>또는</u> <u>그</u> <u>특수관계인</u> <u>에게</u> <u>의결권</u> <u>을</u> <u>위임</u> <u>한</u> <u>자</u> <u>가</u> <u>소유</u> <u>하</u> <u>는</u> <u>의결권</u> <u>이</u> <u>있는</u> <u>주식</u> <u>의</u> <u>합계</u> <u>가</u> <u>의결권</u> <u>이</u> <u>있는</u> <u>발행주식총수</u> <u>의</u> <u>100분의</u> <u>3을</u> <u>초과</u> <u>하</u> <u>는</u> <u>경우</u> <u>그</u> <u>주주</u> <u>는</u> <u>그</u> <u>초과</u> <u>하</u> <u>는</u> <u>주식</u> <u>에</u> <u>관하여</u> <u>의결권</u> <u>을</u> <u>행사</u> <u>하지</u> <u>못</u> <u>한</u> <u>다</u>. ⑥ <u>감사위원회</u> <u>결의</u> <u>에</u> <u>대하여</u> <u>이사회</u> <u>는</u> <u>재결의</u> <u>할</u> <u>수</u> <u>없</u> <u>다</u>.	<u>서는</u> <u>다른</u> <u>이사</u> <u>와</u> <u>분리</u> <u>하여</u> <u>선임</u> <u>하여</u> <u>야</u> <u>한</u> <u>다</u>. ⑤ <u>감사위원</u> <u>을</u> <u>선임</u> <u>거나</u> <u>해임</u> <u>하</u> <u>는</u> <u>권한</u> <u>은</u> <u>주주총회</u> <u>에</u> <u>있</u> <u>다</u>. <u>감사위원</u> <u>을</u> <u>선임</u> <u>할</u> <u>때</u> <u>에는</u> <u>의결권</u> <u>이</u> <u>있는</u> <u>발행주식총수</u> <u>의</u> <u>100분의</u> <u>3을</u> <u>초과</u> <u>하</u> <u>는</u> <u>수</u> <u>의</u> <u>주식</u> <u>을</u> <u>가진</u> <u>주주</u> <u>는</u> <u>그</u> <u>초과</u> <u>하</u> <u>는</u> <u>주식</u> <u>에</u> <u>대하여</u> <u>의결권</u> <u>을</u> <u>행사</u> <u>하지</u> <u>못</u> <u>한</u> <u>다</u>. ⑥ <u>감사위원</u> <u>을</u> <u>선임</u> <u>거나</u> <u>해임</u> <u>할</u> <u>때</u> <u>에는</u> <u>의결권</u> <u>을</u> <u>행사</u> <u>할</u> <u>최대주주</u>, <u>최대주주</u> <u>의</u> <u>특수관계인</u>, <u>최대주주</u> <u>또는</u> <u>그</u> <u>특수관계인</u> <u>의</u> <u>계산</u> <u>으로</u> <u>주식</u> <u>을</u> <u>보유</u> <u>하</u> <u>는</u> <u>자</u>, <u>최대주주</u> <u>또</u> <u>는</u> <u>그</u> <u>특수관계인</u> <u>에게</u> <u>의결권</u> <u>을</u> <u>위임</u> <u>한</u> <u>자</u> <u>가</u> <u>소유</u> <u>하</u> <u>는</u> <u>의결권</u> <u>이</u> <u>있는</u> <u>주식</u> <u>의</u> <u>합계</u> <u>가</u> <u>의결권</u> <u>이</u> <u>있는</u> <u>발행주식총수</u> <u>의</u> <u>100분의</u> <u>3을</u> <u>초과</u> <u>하</u> <u>는</u> <u>경우</u> <u>그</u> <u>주주</u> <u>는</u> <u>그</u> <u>초과</u> <u>하</u> <u>는</u> <u>주식</u> <u>에</u> <u>관하여</u> <u>의결권</u> <u>을</u> <u>행사</u> <u>하지</u> <u>못</u> <u>한</u> <u>다</u>. ⑦ <u>감사위원회</u> <u>는</u> <u>그</u> <u>결의</u> <u>로써</u> <u>사외이사인</u> <u>위원</u> <u>중</u> <u>1인</u> <u>이</u> <u>상</u> <u>을</u> <u>위원장</u> <u>으로</u> <u>선임</u> <u>하여</u> <u>야</u> <u>하</u> <u>며</u>, <u>위원장</u> <u>은</u> <u>위원회</u> <u>를</u> <u>대표</u> <u>한</u> <u>다</u>. <u>이</u> <u>경우</u> <u>수인</u> <u>의</u> <u>위원</u> <u>이</u> <u>공동</u> <u>으로</u> <u>위원회</u> <u>를</u> <u>대</u> <u>표</u> <u>할</u> <u>것</u> <u>을</u> <u>정</u> <u>할</u> <u>수</u> <u>있</u> <u>다</u>.	- 제4항: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의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방식 도입 - 제5항: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의거,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는 사내·사외이사 불문하고 3%를 적용 - 제6항: 지배구조법 제19조 제7항 의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은 합산하여 사내/사외이사 불문하고 3%를 적용 - 제7항: 현행 제3항을 대체
---	--	---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⑦ (생략)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u>이사</u>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생략) 〈신 설〉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⑦ (현행과 같음)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u>이사회</u>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행된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이 정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4.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채는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 제8항: 현행 제42조 제6항을 대체
--	---	-------------------------------